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권한대행
국무총리 한 덕 수 인

2025년 4월 8일

국무총리 한 덕 수

국무위원
국토교통부장관 박 상 우

● 대통령령 제35438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“회사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”을 “회사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1개의 운송계약(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과 공동으로 체결하는 1개의 운송계약을 포함한다)에 따라 그 소속원(마목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관할하는 학교의 소속원을 말한다)만의 통학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

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

나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

다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

라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

마. 교육감 또는 교육장(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관할하는 학교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통학거리가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개별 학교 등 단위로 통학용 전세버스 운행이 어려운 경우 통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하는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의 장 등은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